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49

발의연월일: 2025. 3. 20.

발 의 자: 강준현ㆍ이병진ㆍ윤준병

복기왕 · 김병기 · 박민규

황명선 · 이광희 · 김 윤

이재관 • 맹성규 • 문진석

김교흥 • 전진숙 • 이인영

김현정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조사·방지·처벌 등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고 자 특별법이 2016년에 제정되었고, 조직화되는 보험사기의 효과적 방지를 위하여 보험사기행위 알선 등에 대한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차례 개정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피해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사기방식이 기존 개인 위주에서 보험 전문지식을 가진 보험업 관련 종사자를 중심으로 지능화·조직화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며, 이에 따라 정비업체·병의원 등과 연계한 교통사고 보험사기 또는 병원·브로커 등과 공모한 병원 과잉·허위 진료적발 사례도 계속되고 있음.

이에 전문적인 보험사기자의 반복된 사기행위를 억제하고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사기 가담을 막기 위하여 편취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조직적으로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한 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악성 보험사기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험사기 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명단공개) ① 금융위원회는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그 보험사기이득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형법」 제114조에 대하여도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공개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성명
 - 2. 나이
 - 3.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 4. 보험사기범죄에 관한 사항(위반행위 및 죄명, 판결선고일 및 선고 형량, 보험사기이득액을 포함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험사기행위공개심의위원회(이하 "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④ 공개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보

험사기범죄의 동기, 내용 및 정도와 그 기간 및 횟수, 보험사기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 ⑥ 금융위원회는 공개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개 대상자를 선정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공개 및 위원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1항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신 설></u>	제11조의2(명단공개) ① 금융위원 회는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그 보험사기이득액이 1억원 이 상이거나 「형법」 제114조에 대하여도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공개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 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

- ③ 제1항에 따른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험사기행위공개심의위원회 (이하 "공개심의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④ 공개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보험사기범죄의 동기, 내용 및 정도와 그 기간 및 횟수, 보험사기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공개 대상자에 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 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 ⑥ 금융위원회는 공개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개 대상자를 선정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공개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